

#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의 〉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4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5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26일

## 3.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 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가 상위법과 불일치에 따라 개정(안 제8조)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착오 인용 사항 수정(안 제13조제6항)
- 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된 상위법 내용 조례 반영(안 제18조)
- 라. 법령에 규정된 명문대로 정비(안 제20조제1항)

- 마. 조례 각 호의 내용 중 상위법과의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 삭제(안 제28조)
- 바.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사항 및 용어 정비(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
- 사. 조례에서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유를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토록 개정(안 제37조)
- 아. 별표 중 명칭 및 내용 현행화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2.13.~3.4.(제출된 의견)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출일자 : 2020. 2. 26. [아현육아-2020-09호(2020.02.26.)]
- 제출의견 : 별표에 대한 명칭 및 내용 현행화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명 및 검사명(검사유형 포함) 등에 대한 의견 반영하여 상정함

현 행					상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제13조제4항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제13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1. 사용료				
구분	용도	단위	상한액 (단위:원)	비고	구분	용도	단위	상한액 (단위:원)	비고
사용료	영유아놀이 프로그램	월	30,000		사용료	영유아 프로그램	월	30,000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무료			놀이체험실 이용		무료	
상담료	각종 치료 상담	회	30,000		상담료	각종 치료 및 상담	회	30,000	

현 행				상 정 안			
2. 검사료				2. 검사료			
구분	검사명	이용료	비고	구분	검사명	이용료	비고
영유아 용	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K-SSRSP)	무료	선별/발달	영유아 용	아동발달검사(K-CDI)	무료	발달 검사
	아동발달선별검사(K-CDI)		선별/발달		영아선별·교육진단 검사(DEP)		
	영아발달선별검사(DEP)		선별/발달		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K-SSRSP)		사회성 검사
(생략)	30,000원	언어	(현행과 같음)	30,000원	언어 검사		
○ 비 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 영어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등) 2개소 이상의 보육료 등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비 고 :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3.24.)

##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0.5.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9호로 제출되어, 2020.5.26.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연유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 삭제,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검사명 등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의 경우,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4) 이외의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6)의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구립 어린이 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음. 안 제28조의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의 취소와 안 제35조의 비용의 보조 등과 안 제37조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7)와 같은 법 제26조 및 제36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조문을 삭제하거나 신설 및 수정하고 안 제13조제4항 관련 [별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의 용도와 검사료의 검사 명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규정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5)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6)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7)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8. 5., 2015. 1. 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 참고로 2020.5.31.기준으로 마포구 영유아는 15,081명이고 어린이 집은 국공립 75개소를 포함한 총 203개소에 7,5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구립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소를 확충하였고 2021년에도 5개소 확충을 목표로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확인되었음.

〈표 1〉 마포구 어린이집 및 영유아 현황

(단위: 개소, 명, 2020.5.14. 기준)

○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단체	직장	부모 협동	방과후
시설수	203	75	36	68	3	16	4	1
정 원	8,999	4,588	1,927	1,232	127	932	153	40
현 원	7,510	3,997	1,614	956	100	673	137	33

○ 영유아 현황 : 15,081명(만0~2세 6,817명, 만3~5세 8,264명)

〈표 2〉 구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연도별 실적·목표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 확충 수	6	2	5	5	5

※ 〈표1,2〉 자료출처: 마포구(신규 확충 수는 서울시 확충심의 승인 기준이며 2018~2020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이며 2021~2022은 확충 계획을 표시함)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 삭제, 신설하는 등 법제처 개정 협조사항을 반영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하였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7. 기타자료(비용추계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정우열 (☎ 3153-8905)

#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의 〉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5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5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26일

## 3. 제안이유

- 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
- 다.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다.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마. 보칙(안 제19조~제20조)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0조, 제33조
- (2)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2조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제4조
-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약칭: 도농교류법)
-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약칭: 농산물직거래법)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7) 「의료법」 제3조
- (8)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1차년도-2020, 구비 6,683만원 소요)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0. 2. 13. ~ 3. 4.(제출된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3) 위원회 사전심사(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3.24.)

## 6. 검토의견

### 가. 제안경위

- 본 제정조례안은 2020.5.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로 제출되어, 2020.5.26.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 조달체계 확립으로 상생교류를 통한 도농 간 균형발전의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검토의견

###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sup>8)</sup>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5조<sup>9)</sup>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도농교류법」 제3조<sup>10)</sup> 및 「농산물직거래법」 제3조<sup>11)</sup>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8)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9)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7.13.자로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금천구 등 13개구<sup>12)</sup>에서도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됨.(2020.6.기준).
- 따라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등 지원대상자에게 공공급식의 공급 정책이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농상생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 하겠음.

## (2)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으로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공공급식 지원 대상, 그 내용과 방법 및 신청 등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을,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의 경우로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15명이내의 구성 및 해촉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공공급식센터로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기능과 관리·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5장 보칙에서는 안 제19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제20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및 추진방법과 활성화 방안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추진사업의 범위에 있어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12)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이상 13개구)

2020.10월부터 12월말까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면 시비 2억 3066만 4천원과 구비 6683만원의 총 2억 9749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며 인건비 및 시설 운영 및 사업비는 시·구의 5:5의 매칭비율로 하고 배송 인건비, 카드수수료, 차액지원비(공공급식센터를 통해 60% 이상 구매 시 1인 1식 당 500원 지원), 차량구매비용 등의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로, 구비매칭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며 민간위탁 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sup>13)</sup>에 의거 사전에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음.

-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6조의 경우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급식 운영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당연직 2명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제4장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있어 집행부 제출 비용추계에 의하면 사무직으로 센터장 1명을 포함한 4명과 배송요원 4명으로 총 8명의 인력이 운영되며 배송요원 1명당 25~30개소 기준이면 100~120개소 배송이 예측됨에 따라 마포구 어린이집 203개소(2020.5.31.기준)에 비교하면 공공급식 참여율 증가 시 공공급식센터 운영 규모의 확대가 예견됨에 친환경유통센터 자체건설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마포구에서 지급되는 보육료 중 급식비는 만 0세~2세는 국비 1,900원에 구비 455원이 지급되고 만 3세~5세까지는 국비 2,500원에 구비 2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 어린이집에서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60% 이상 구매 시 1인당 500원씩 시비 추가 지원이 되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어린이집과의 급식의 차별화로 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종합의견

-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와 「아동복지법」 제35조와 「도농교류법」 및 「농산물직거래법」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14)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급식센터 이용 어린이집과 기타 어린이집과의 차등 해소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

####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